은행은 본인에게 이 신청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본 신청서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

원금상환 유예 신청서

(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 추가약정용)

한국카카오은행 앞 20 년 월 일

본 인 : (인)

주 소 :

제1조 신청 내용

[대상] 본인의 원금상환 유예 사유는 최근 6개월내 발생하였으며, 본인의 채무는 대출 실행 후 1년(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)이 경과한 채무입니다. 본인은 귀 행에 다음과 같은 사유(□ 실직, 폐업 □ 질병, 상해 □ 자연재해) 로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하고자 합니다.
[원금상환 유예기간] 본인은 원금상환 유예를 1년간 신청합니다. · 대출 만기일이 원금상환 유예 종료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대출 만기일까지 유예합니다.
[원금상환 유예방법] 본인은 원금상환 유예 승인일로부터 15일 이후 납입일이 도래하는 본 대출의 납부하여야 할 원금부터 약정서상 대출만기를 유지하고 유예된 원금은 (□대출잔여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, □대출만기일에 일시상환) 상환하기로 합니다. 단, 본인은 연체금(미납원리금, 지연배상금, 기타비용 등)이 있는 경우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.
[원금상환 유예불가] 본인은 은행의 ① 제출기한 내 증빙서류의 미제출, ② 은행의 신청자격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, ③ 승인 후 연체금(미납원리금, 지연배상금, 기타비용 등) 발생으로 인하여 은행이 원금상환 유예를 거부할 수도 있음을 확인합니다.

제2조 관련증빙 제출

본인은 원금상환 유예 신청 관련 증빙을 은행에 즉시 제출하기로 합니다.

공통서류	· 신분증 사본
실직	· 실업급여 확인서류 ·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(사본), 수급자격 인정명세서(고용센터 발급) 중 택일
폐업(휴업)	· 폐업(또는 휴업)사실증명원
질병·상해	· 진료비(약제비) 계산서·영수증 등
자연재해	· 피해사실확인서 등

본인(채무자 및 담보제공자)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, 본 신청서 사본 1부를 확실히 수령하였으며, 그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하였음.

본인(채무자)	(인)